

kiri Weekly

2014.12.1 제310호

포커스

변액보험 보증수수료 관련 공동행위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과 시사점
자동차보험을 통한 다른 손해보험상품 판매 가능성 분석

글로벌 이슈

2015년 세계 보험산업 전망
주요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시행과 시사점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변철성 수석담당역 / 02-3775-9115)



변액보험 보증수수료 관련 공동행위 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과 시사점

이승준 연구위원

요약

-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월 31일 변액보험 보증수수료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명령을 취소해 달라면서 신한생명이 낸 소송에서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합법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정보를 교환한 행위를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
- 이는 행정기관의 적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설립된 작업반 운영과정에서 의견개진 및 정보교환과 같은 공동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외형상 일치라도 반드시 부당 공동행위를 위한 합의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례로 향후 보험회사 법규리스크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서울고등법원¹⁾은 지난 10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피고)를 상대로 신한생명보험(원고)이 낸 변액연금보험 보증수수료 관련 부당 공동행위 혐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신한생명보험의 청구를 받아들임.

- 앞서 2013년 4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생명보험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관한 심결²⁾에서 이들 생명보험회사가 변액연금 보증수수료율을 공동책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함.
 - 공정위는 보험회사들이 작업반, 실무과장회의, 상품담당부서장회의 등 수차례 모임 및 정보교환, 의사연락 등을 통해 2002년 8월 30일 경 변액연금보험에 적용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 수수료율을 담합하였다고 함.

1) 서울고등법원 2013누11804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2)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2013-069호, 2013. 4. 4.

- 그러나 법원은 적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이루어진 작업반 활동에서 이루어진 보험회사 간 의견개진 및 정보교환만으로 부당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음.
- 이번 판결은 금융감독원 지도에 따라 만들어진 작업반 등에서 이루어진 보험회사의 정보교환 및 의사 연락 등을 합의로 인정하지 않은 점과 일부 공동행위 가담 보험회사가 조사협조를 통해 합의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이를 담합 증거로 인정 않은 점 등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함.
 - 본고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담합을 위한 합의와 조사협조를 포함한 자진신고의 증거능력이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 봄.
- 공동행위를 위한 합의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러한 행위에는 가격의 결정, 유지, 변경이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 서울고등법원은 보험회사가 작업반, 실무과장회의, 상품담당부서장회의 등에서 행한 변액연금보험 보증수수료에 대한 정보교환 및 의사연락을 가격 결정을 위한 “합의”로까지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함.
 - 2003년 보험업법 개정 이전에 보험상품 심사과정을 통해 사실상 보험료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의 지시로 만들어진 작업반 활동에서의 의견개진 및 정보교환은 합법적으로 볼 수 있음.
 - 법원은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개발원 직원까지 참석한 회의에서 수수료율 수준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았으며 단지 수수료율 산정 능력을 갖춘 일부 대형사의 수수료율 수준에 대한 의견 제시 수준에 그쳤을 것으로 보았음.
 - 실무과장회의는 그 성격이 보험개발원이 보험회사에 상품개발 시 유의사항을 통보하는 성격이 강한 회의이며 상품담당부서장회의는 금융감독원이나 보험개발원이 그동안 결정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주는 회의이므로 작업반 활동과 별도로 합의한 정황으로 볼 수 없음.
 - 변액연금보험 보증수수료의 외형상 일치하는 보증수수료 산출이 가능한 일부 대형사의 가격을 하위 보험사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행태로 볼 수 있음.

- ■ 자진신고의 증거능력에 관해서 서울고등법원은 조사협조자를 포함하여 작업반에 참석한 일부 회사 직원들이 합의를 인정한 진술을 했으나 그 반대되는 진술도 있음을 들어 보험회사들이 변액연금보험 보증수수료를 공동책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음.
 - 이는 부당 공동행위 적발을 위하여 자진신고와 조사협조³⁾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공정거래당국의 향후 담합 관련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면 부당 공동행위에 대하여 가장 먼저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면제해 주고 두 번째 자진신고나 조사협조의 경우 시정명령을 감경하고 과징금의 50%를 감경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조사협조자의 경우 이미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담합의 실제 여부와 관계없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의 면제와 감경을 받기 위하여 합의 사실을 인정할 경제적 유인이 있으며 이는 매출이 큰 대형사일수록 크다고 볼 수 있음.⁴⁾

- ■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적법한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른 보험회사 공동행위에 대해 합의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라는데 그 의미가 크며,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이원적 규제의 상충에 따른 보험회사 법규리스크를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공동행위 당시(2002년) 감독당국의 실질적 보험가격 통제가 가능했던 점 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작업반에서 대형사를 추종하여 책정된 변액연금보험 보증수수료의 외형상 일치를 보험회사 가격 합의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점은 현재의 상황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큼.
 - 아직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남아 있으므로 이번 판결이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지만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자체로도 금융감독당국과 공정거래당국의 이원적 규제 상충 완화 측면에서 보험산업에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kiri](#)

3) 공정거래위원회 「부당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에 의하면 자진신고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조사 시작 이전에, 조사협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해당 행위 조사 시작 이후에 해당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위원회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함.

4) 부당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관련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부과됨(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2).